구의회사무국

보 도 자 료

제공일자	2015년 12월 15일		
담당부서	강북구의회사무국 홍보팀		
국 장	강대형	(직통전화번호)	901-4501
팀 장	정세진	(직통전화번호)	901-4530
담 당 자	김정범	(직통전화번호)	901-4532
[√]사진있음		[ ] 총 2 쪽	

제 목 :	강북구의회 제195회 제2차 정례회, 강북구 의원 쉼 없는 조례안 발의·의결로 살아있는 지방자치 실현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12월 15일(화)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주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3건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191회 임시회부터 제195회 정례회까지 총31건의 조례안을 발의 의결하여 자치법규 제·개정과 정비에 솔선수범하는 등 살아있는 지방자치를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로 심의 가결되어, 앞으로 시행될 조례는 총3건으로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우, 구본승, 한동진, 이영심, 유인애, 김명숙, 이정식, 김영준 의원 공동발의)

▲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준, 이정식, 김명숙, 한동진, 이영심, 유인애, 구본승, 장동우 의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본승 의원)

행정사무감사 증인 보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 장동우, 구본승, 한동진, 이영심, 유인애, 김명숙, 이정식, 김영준 의원 공동발의 본회의 가결

○ 이번 조례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 행정사무감사·조사 증인의 거짓 증언에 대한 고발 절차와 증인 보호에 대해 새로 규정하였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면밀한 행정사무감사·조사로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거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삭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

- 김영준, 이정식, 김명숙, 한동진, 이영심, 유인애, 구본승, 장동우 의원 공동발의 본회의 가결

○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규정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 기존 조례의 해촉된 검사위원의 5년간 위촉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였다.

강북구 환경보전의식의 저변 확대 기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구본승 의원 발의, 본회의 가결 -

○ 이번 조례 개정은 강북구민대상에 강북구 환경보전활동에 기여가 큰 지역 주민에게 '환경상' 부문을 신설하여 수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이번 조례안으로 강북구 환경보전운동의 생활화와 지역환경문제 인식에 대한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무관 **김정범** 홍보팀장 **정세진** 구의회사무국장 12/16 **강대형**

협조자

시행 구의회사무국-101379 ( ) 접수 ( )

우 0103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89(수유동) / http://council.gangbuk.go.kr

전화 901-4532 /전송 901-4519 / zudai@gangbuk.go.kr / 대시민공개